

제171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면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면
3.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	4면
4.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	7면
5. 서면답변서	1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2.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2월 1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7년 2월 2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7. 2. 7)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중 인)

가. 제안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 사업으로 수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부가가치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 신설(안 제11조)
- 다음의 부가가치세 관련 조례는 부칙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